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(※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)						
신 청 인	성 명	생년월일				
	주 소	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로 갈음				
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						
구분		해당 여부	소재지 또는 내역	금액	명의인	신청자와의 관계
기타 자산	임차보증금	예 □ 아니오 □		원	[임차인]	
				원	[임차인]	
	분양권	예 □ 아니오 □		원	[수분양자]	
				원	[수분양자]	
	비상장주식	예 □ 아니오 □		원	[주주(보유자)]	
				원	[주주(보유자)]	
	출자금/ 출자지분	예 □ 아니오 □		원	[출자자]	
				원	[출자자]	
부채	임대보증금	예 □ 아니오 □		원	[임대인]	
				원	[임대인]	
1.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,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						

-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- 2.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
 - 가. 임차보증금 : 해당 주택,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)
 - *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
 - 나. 분양권 :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(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)
 - 다. 임대보증금 : 해당 주택,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)
 - 라. 비상장주식 : **증권사 조회내역, 주식보관증** 등 종목,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- 마. 출자금/출자지분 : 출자증서 사본

(인) 신청인:

2025 년 6 월 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

- ※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(벌칙)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※ 주택법 제106조(과태료)

입주자자격,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